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23
----------	-------

발의연월일 : 2026. 4. 1.

발 의 자 : 임미애 · 윤준병 · 이연희
송옥주 · 이주희 · 윤후덕
오세희 · 전종덕 · 이원택
임호선 · 윤종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은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또는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고, 설계·감리업무는 산림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필요한 수목병해충 진단·처방 및 약제 기반 치료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나무병원이 이러한 방제사업의 수행과 설계·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수행 주체에 「산림보호법」상 등록된 나무병원을 포함함으로써 방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

조의3제2항제4호 및 제8조의4제1항제4호 신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나무병원

제8조의4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나무병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제사업의 설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계·감리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제사업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감리)</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③ ~ ⑥ (생략)</p> <p>제8조의4(방제사업의 대행 등) ①</p> <p>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제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② ~ ④ (생략)</p>	<p>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감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u>한 나무병원</u></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4(방제사업의 대행 등) ①</p> <p>-----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u>한 나무병원</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